Asian Tax Journal Vol.27, No.3 (October 2026) pp.91－109 https://doi.org/10.35850/KJTA.27.3.4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ISSN 3140－6092

#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와 세법 내재적 기간배분 원리*

# The Timing of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trinsic Period-Allocation Principle in Tax Law

홍난희**
Hong Nanhee

〈요 약〉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대원칙인 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가 현대 기업회계의 정교화된 발생주의 패러다임과 만날 때 발생하는 규범적 관계와 해석상의 난제를 고찰하고, 세법 내재적 기간배분 원리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법학계 및 과세 실무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을 회계 원칙 차용의 유일한 통로로 취급해 온 한계를 지적하고, 법인세법이 '장부가액(제19조)' 및 '감가상각 범위액(제23조)' 규정을 통해 이미 고유한 기간배분과 원가대응의 논리를 조문 내에 반영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의 방문판매 수수료 판례(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를 원심 및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재분석한다.

의무확정주의는 발생주의 체계와 단절된 별개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 내재적 기간배분 구조 위에서 손금 인정을 과도하게 허용하지 않기 위해 법적 종결성을 검증하는 '최종적인 규범적 제한장치'로 재정립됨이 타당하다. 특히 방문판매 수수료 판례는 대법원이 실제로는 제43조가 아니라 세법 고유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제40조, 시행령 제68조)만으로 수익비용대응의 결과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근거로 특정 지출이 식별 가능한 미래의 익금 발생원과 개별적·구체적 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개별대응가능성)를 판별기준으로 제시하고, K-IFRS 제1115호 하의 계약체결 증분원가에 대해 개별대응가능성 테스트와 감가상각 법리의 유추를 결합한 2단계 판별기준을 도출한다.

* 본 논문은 2026학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a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s(2026).

** 제1저자(First Author),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Kangnam University, nhhong@kangnam.ac.kr

Received 26 June 2026 Revised 8 September 2026 Accepted 11 September 2026

본 연구가 제시하는 세법 중심의 판별기준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엄격해석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의 법적 확실성과 고도화된 경제적 실질을 법인세법 체계 자체의 내재적 정합성 하에서 합리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법리적 주춧돌을 제공한다. 다만 확률적·추정적 수익인식이 결합된 거래에는 본 연구의 판별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의무확정주의, 손금 귀속시기, 발생주의, 기간배분 원리, K-IFRS 제1115호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ll-Events Test (Article 40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sophisticated accrual paradigm of modern corporate accounting, and identifies an intrinsic period-allocation principle embedded within tax law itself.

This study critiques the prevailing tendency in prior tax scholarship and practice to treat the provision on the application of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rticle 43) as the sole gateway through which accrual-based logic enters the Corporate Tax Act. It normatively demonstrates that the Act already reflects the logic of period allocation and cost-matching within its own statutory infrastructure, through provisions such as book value (Article 19) and depreciation limits (Article 23), and re-examine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on door-to-door sales commiss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08Du12320, decided January 27, 2011) based on the original text of the lower and Supreme Court decisions.

The All-Events Test should be redefined not as a principle detached from the accrual system, but as a final normative constraint that verifies legal finality over the inherent period-allocation framework of tax law. Notably, the door-to-door sales commission precedent shows that the Supreme Court reached its result through the Act's own provisions on the fiscal year of attribution (Article 40 and Article 68 of the Enforcement Decree), rather than through Article 43. Building on this finding, this study proposes individual traceability—whether a given expenditure bears a specific, identifiable causal relationship to a traceable future item of taxable income—as the governing test, and derives a two-stage framework combining the individual traceability test with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depreciation doctrine for contract acquisition costs under K-IFRS No. 1115.

The tax-centered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harmonizes with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that safeguards taxpayers' predictability, while offering a legal cornerstone for reconciling legal certainty under the principle of statutory taxation with advanced economic substance within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Corporate Tax Act.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limits of its framework for transactions involving probabilistic or estimation-based revenue recognition, leaving this issue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All-Events Test, Timing of Deductible Expenses, Period-Allocation Principle, Accrual Basis, K-IFRS No. 1115

# Ⅰ. 서 론

기업은 영속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전제로 존재하지만, 과세권자의 조세 징수와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일정한 회계기간을 단위로 손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간과세의 원칙 하에서 지출된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과세소득 결정의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기업회계는 현금의 실제 수취나 지출과 관계 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근간으로 하며, 이는 수익비용대응 원칙을 통해 정교화된다. 한편, 법인세법은 과세의 객관성과 예견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손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해당 항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며, 이른바 확정주의를 소득 인식의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1)]

그러나 세법상 손금의 의무확정주의는 단순히 비용 인식에 있어 기간 귀속만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계적 기준이 아니다. 법인세법은 이미 익금에 대응하는 손비로서 '양도 당시의 장부금액'을 설정하고[2)], 자산 원가의 자본화와 기간 배분을 강제하는 감가상각 규정[3)] 등을 명시해 두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의 발생주의(Accrual Basis)와 수익비용대응의 사상을 법문 내에 스스로 유기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으며, 다만 손금 인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의무의 확정이라는 법적 제한을 두어 통제하고 있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도입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등으로 인해 수익 인식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비용의 처리 시기 또한 실무적으로 더욱 정교한 판단이 요구되면서 발생한다. 실제 과세 현장에서는 법률상 채무가 확정되어 순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귀속 원리에 따라 손금 인정을 유예(자산화)시키는 판례의 경향이 관찰된다. 대법원은 방문판매 수수료 사건 등에서, 지출의 의무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지출이 미래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된다면 세법 고유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통해 손금 인정을 유예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구독 경제나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는 현대적 과세 현장일수록, 이러한 판례의 해석 태도가 세법 고유의 의무확정주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규범적 본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회계상 비용 인식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세 가지 분석 경로로 체계화하고, 방문판매 수수료 판례와 최신 비전형 거래 환경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을 통해 의무확정주의의 실무적 적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적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3) 법인세법 제23조

적인 손금 귀속 법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적 화두를 던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후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 원칙과 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기본 원리를 비교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를 둘러싼 쟁점과 판례 구조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현대적 비전형 거래, 특히 K-IFRS 제1115호상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개별대응가능성 테스트와 감가상각 법리의 유추 적용을 결합한 2단계 판별기준을 제시하고, 그 적용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요약한다.

# Ⅱ. 기업회계와 세법의 손금 귀속시기 원칙 비교

## 1.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와 수익비용대응원칙

재무회계는 외부이해관계자 중 주요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일관된 논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의해 확립된다(신현걸 외, 2026). 개념체계에서는 보고기업의 성과를 보고할 때,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가 재무상태에 변동을 가져온 기간에 손익을 인식하는 발생기준 회계가 기업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더욱 유용하다고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외상 판매 시 발생기준을 적용하면 대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성과를 적절히 보고할 수 있으며, 이때 인식한 매출채권은 미래 순현금유입액 및 경영진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학에서의 발생주의는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의해 수정·보완된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당기에 인식된 특정 수익과 이에 기여한 비용을 동일한 회계기간에 결속시킴으로써 귀속 손익을 산정하는 규범적 기준이다. 이는 기업이 달성한 경제적 성과(수익)와 이를 위해 희생된 투입노력(비용)을 인과관계에 따라 정교하게 매칭한다는 점에서 그 규범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백원선, 2011a).

현행 회계학의 개념체계는 수익과 비용을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 즉 지분참여자의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감 구조 속에서 도출해 내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재무보고의 패러다임을 과거 손익계산서 중심의 수익·비용 대응 논리에서 재무상태표 중심의 자산·부채 접근법(Asset-Liability Approach)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온 역사적 배경에 기인한다(Dichev and Tang, 2008). 과거 독립적으로 정의되던 손익 항목들이 이제는 순자산의 변동 메커니즘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인식되는 것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체계

4)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연계하여 수익과 비용을 정의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 원칙의 중요성을 충분하

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개별 기준서에서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적용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우선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개념체계와 개별 기준서 간의 괴리는 실제 자산의 인식과 상각 과정을 다루는 규정들에서 명확하게 관찰된다. 대표적으로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는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영업수수료를 발생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약체결 증분원가'라는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겉으로는 자산의 인식을 설명하는 듯하지만, 그 실질은 향후 실현될 미래 수익의 인식 스케줄(기간)에 맞추어 비용을 정교하게 안분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익비용대응의 발현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규정한 K-IFRS 제1016호 역시 마찬가지다. 자산의 가치 하락(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이라는 재무상태표적 변동을 엄밀히 측정하여 상각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기여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라는 손익계산서적 대응 논리에 따라 감가상각법과 상각 기간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 현대 재무회계는 개념체계의 선언적 지향점인 자산·부채 접근법을 이론적 토대로 삼으면서도, 구체적인 실무를 통제하는 개별 기준서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실천적 작동원리로 삼고 있는 셈이다.

회계거래의 비용 인식은 단순히 현금 지출 시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수익 창출에 기여한 시점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개별 기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거래에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접적 대응이다. 매출원가와 같이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판매 전 매입원가나 제조원가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판매 시점에 비용화 된다.

둘째, 체계적·합리적 배분이다. 지출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하여 특정 수익과 일대일 매칭이 어려운 경우, 자산 취득에 소요된 지출을 일단 자산으로 계상(자본화)한 뒤, 해당 자산이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내용연수) 동안 원가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안분하여 비용화한다.[5]

셋째, 기간 대응 또는 즉시 인식이다. 광고비나 급여처럼 특정 수익과의 인과관계보다 시간의 경과 자체가 수익 창출 과정인 경우이다. 이때는 이연(Deferral)과 발생(Accrual)의 기법을 활용하여 해당 기간의 수익에 대응시킨다.[6]

---

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BC4.95(5)).

5)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해당 자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취득가액을 비용 처리 한다.

6) 예를 들어, 광고비는 법인의 영업활동이나 매출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지만 현금 지출 여부와 상관 없이 광고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지급할 대가를 부채로 계상한다.

## 2.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귀속 시기를 해당 항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확정주의를 소득 인식의 대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귀속 시기 결정의 기준인 ‘확정’은 법적 측면에서의 권리 발생과 의무 부담을 뜻하며, 학계와 판례 역시 이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김완석과 황남석, 2026 ; 임승순, 2019 ; 이태로와 한만수, 2020 ; 김재승, 2014).

다만, 실제 운용에 있어 익금의 권리확정과 손금의 의무확정은 법적·제도적 완충 장치 유무에 따라 그 해석의 엄격함에서 차이를 보인다. 익금의 경우 대손금 제도나 경정청구 등 사후적 구제 절차가 존재하므로,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학설 및 판례 역시 익금을 규율하는 권리확정의 개념을 일률적·형식적 기준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사안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파악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법상 권리의 확정이란 해당 권리가 목적으로 삼는 경제적 이익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매우 고조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판단의 영역에 해당한다(이창희, 2026).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익금의 귀속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과세 대상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였는지 여부는 개개의 권리가 지닌 고유한 성질과 법률상·사실상의 다각적인 사정을 개별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7] 결국 익금의 영역에서 ‘확정’의 개념은 고정불변의 지표가 아니라 사안별 실질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외연적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이태로와 한만수, 2020).

반면, 의무확정주의는 손금의 인정 시 의무의 법률적 종결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인 법령 체계상으로는 제4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8조부터 제71조에서 거래 유형별 구체적인 귀속 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외의 보충적 사항은 시행규칙 제36조를 통해 다시금 ‘확정된 날’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구조를 취한다. 한편, 동법 제43조는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적 관행을 조세 체계 내로 수용하고 있다.

손익의 확정 시점을 법률적 용어로 환원하면 결국 권리(자산)와 의무(부채)가 발생·소멸하거나 증감한 때를 의미하며(김길훈, 2020), 이는 법인세법이 소득의 기간 귀속을 경제적 실질이나 회계적 관념이 아닌 철저한 법률적 기준에 의거하여 규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이창희, 2026).

그러나 이러한 법률주의적 대원칙이 구체적인 실무령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논리적 균열에 대해 학계의 비판적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재승(2013)은 권리확정주의가 귀속 시기 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사법부의 판례 역시 개별 사안의 해결에 치중하여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에 규정된 구체적 귀속 기준들 중 일부는 상위 법률인 권리확정주의의 외연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징후가 있으며, 자산의 평가손익을 다루는 법인세법 제42조 역시 권리확정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 형식으로 존재하여 전반적인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의 귀속 기준들을 법률상 명확한 예외 조항으로 격상하고 평가차손익의 근거를 정비하는 입법론적 개선과 함께, 경직된 '확정'이라는 용어 대신 '실현' 또는 '발생'으로 전면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손금의 영역으로 좁혀서 의무확정주의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채무의 사법적(私法的)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 바 있다. 이태로와 한만수(2020)에 따르면, 세법상 채무 확정의 본질은 납세자의 외부 거래와 연동된 사법상의 법률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회계적 계산 절차나 원가 배분 형식에 따라 계상되는 감가상각비 등과 같은 항목에는 본질적으로 채무확정주의라는 잣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채무 확정의 성립요건으로 ⅰ) 민사법상 채무성립요건의 구비, ⅱ) 급부 의무의 원인이 되는 객관적 사실의 실제 존재, ⅲ) 채무 가액의 합리적 평가 가능성이라는 삼분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임승순(2019) 역시 이에 궤를 같이하여, 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사법상 채무 성립 요건이 완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규정된 '채무의 이행기'가 세법상 손금의 확정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종합하면, 전통적인 세법학계는 손익의 귀속 시기를 사법상 권리의무의 성립 및 이행기라는 형식적·법률적 틀 내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내부 원가 배분(감가상각 등)과 외부 법률 거래(채무 확정)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현대의 비전형적 복합 거래 하에서 발생하는 회계상 원가 유예(자산화) 흐름을 세법 자체의 기간배분 인프라로 포섭해 내는 유기적 해석론을 전개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세법을 단순히 기업회계의 정교화에 수동적으로 유인되는 종속적 규범이나 경직된 문언에 갇힌 단절된 체계로 파악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법인세법 고유의 조문 구조가 내포하고 있는 기간배정 인프라의 실체를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의무확정주의의 한계를 외부 회계의 수용이 아닌 세법 체계 내에 내재되어 있는 발생주의 체계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세법 내재적 기간배분론[8]은 바로 이러한 인식적 전환에서 출발한다.

# Ⅲ.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를 둘러싼 쟁점과 판례 분석

## 1.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통제 기능

법인세법상 '확정'의 개념은 개별 사안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규범적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길훈, 2020 ; 김현동, 2022). 복식부기 원리 하에서 세법상 손금은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자산의 유출 또는 채무의 발생과 필연적으로 연동된다. 따라서 의무확정주의가 포착하고자 하는 규범적 실체는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되는 부채가 성립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자산의 가치가 소멸하는 시점이다. 이처럼 법적 귀속 기준을 관철하는 것은 과세소득을 객관적·획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의적인 손익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세목적적 공평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세법상 손금의 의무확정주의를 회계상 발생주의와 본질적으로 단절되거나 충돌하는 별개의 원칙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의무확정주의는 세법 체계 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간배분 구조를 아우르면서, 단지 손금 인정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종결성이라는 최종적인 제한을 부가한 기제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세법이 회계상 '판매보증충당부채'와 같은 추정 항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발생주의 사상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니다. 채무 이행의 법률적 종결성과 가액의 확정성이라는 최종적인 규범적 검증을 통해 조세행정적 확실성이 담보될 때까지 그 인식 시점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보수적 통제 기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결국 의무확정주의 체계 하에서 손금의 확정 경로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지출과 동시에 부채가 증가하여 순자산 감소가 확정되는 즉시 비용화의 경로이며, 둘째, 지출 시점에 순자산의 변동 없이 자산의 증가로 치환되는 자산화(이연)의 경로이다. 후자의 원가는 일단 자산의 취득가액(자본화)으로 유예된 후, 해당 자산이 양도되거나 가치가 소멸하는 시점에 비로소 손금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의무확정주의를 기간귀속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외부 회계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세법이 스스로 마련해 둔 기간배분 구조 안에서, 특정 지출을 자산으로 미뤄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곧바로 인정할 것인지를 세법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손금의 확정 경로를 즉시 비용화와 자산화(이연)의 두 갈래로 가르는 기준 역시,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출이 특정 가능한 미래

8) 본고가 사용하는 '세법 내재적 기간배분 원리'는 법해석방법론 일반론에서 통용되는 기존 개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가 법인세법 제19조·제23조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롭게 개념화하는 용어임을 먼저 밝혀둔다.

익금과 개별적으로 결속되어 있는지 여부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다음 절에서 살펴볼 회계상 비용 인식의 세 가지 경로와 그 판별 논리를 공유한다.

## 2. 회계상 비용 인식 원칙과 의무확정주의의 연결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업회계의 비용 인식은 수익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세 가지 경로로 구분되며,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는 이러한 회계적 경로의 경제적 실질을 수용하면서도 '법적 확정'이라는 필터를 통해 손비의 귀속 체계를 정교하게 통제한다. 이 세 가지 경로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판별 기준은, 해당 지출이 식별 가능하고 특정 가능한 미래의 익금 발생원과 개별적·구체적 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이다. 직접적 대응과 체계적·합리적 배분은 이러한 개별 대응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기간 대응은 특정 수익원과의 개별적 연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별 대응가능성의 유무가 의무확정주의의 구체적 작동 방식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세 가지 경로별로 살펴본다.

첫째, 직접적 대응을 통해 손금이 유예되는 경우이다. 세법은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익금(수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확정하는 직접 대응 구조를 취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되는 대금 지급 의무가 선행하여 발생했더라도, 해당 익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무확정주의에 기반하여 손금 확정을 유예하며 이를 자산(재고)의 가액으로 관리하도록 통제한다.

둘째, 체계적·합리적 배분을 통해 손금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지출의 효익이 다년도에 걸쳐 발생하는 배분 경로의 경우, 세법은 지출 시점에 법률적 채무가 확정되었더라도 순자산의 실질적 감소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즉시 손금화하지 않는다. 물론 세법상 감가상각 제도가 납세자의 법인의무 이행 선택권을 존중하는 임의상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회계의 강제적 배분 구조와는 일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자의적 손금 산입 권한 역시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 범위액)가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 한도'라는 기간배분적 제한틀 내부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고유의 규범적 통제 구조를 지닌다. 세법은 이처럼 제도적으로 마련된 상각 인프라 내에서 자산의 가치가 시간적·물리적으로 소멸하는 시점에 손금을 분할 확정함으로써, '확정'의 개념을 자산의 가치 감소 과정에 유기적으로 결속시킨다.

셋째, 기간 대응 및 법적 종결성 필터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특정 수익과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하기 어렵거나 효익이 당기에 소멸하는 기간 대응 항목에 대해 세법은 회계적 처리를 상당 부분 준용하여 당기 손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세법은 이 지점에서도 법률적 계약 관계에 따른 의무의 종결성을 최종 필터로 작동시킨다. 회계상 당기 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개별 실체 조문에서 현금주의를 강제하거나(예 : 제24조 기부금), 지급 의무의 법적 확정 여부가 미비한 항목(예 : 확정되지 않은 쟁송 비용, 법적 근거가 미비한 성과급 적립액 등)의 경우 의무확정주의가 우선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차단한다.

결국 손금 인식의 흐름은 단순히 회계적 경로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법이 요구하는 법적 의무의 성숙도를 통과하였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자산화 또는 당기 비용화의 경로가 결정되는 구조를 취한다.

## 3. 세법상 손금 귀속 결정의 규범적 근거와 회계원칙의 수용

법인세법은 형식적으로 의무확정주의를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개별 실체 규정들을 통해 회계상 발생주의와 수익비용대응의 논리를 조문 내에 깊숙이 투영하고 있다. 즉, 세법은 손금 귀속을 판단하기 위해 외부의 회계 원칙을 사후적·보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법령 자체에 유기적인 기간배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선, 법인세법은 손익 획정의 핵심 도구로 '장부가액'이라는 회계적 개념을 법령 전면에 내세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의 범위를 규정하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1조 제1항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원가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그 자산에 대하여 이미 손금으로 인정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이 창출에 기여한 원가 중 손금으로 이미 확정·귀속된 부분과 아직 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잔여 부분을 구분해 주는 세법상 계산의 산물이다. 이는 기업회계상 장부금액과 유사한 계산구조를 취하지만, 세무조정을 거쳐 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회계적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법이 이처럼 손금의 가액과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기초로 장부가액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 가액을 형성하는 내재적 원리인 기간 배분의 구조를 세법이 스스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액의 확정은 결국 인식 시점 및 원가 배분의 흐름과 법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항목을 정의할 때도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한 대응 논리를 충실히 법문화하고 있다. 제15조의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제19조 제1항이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손비의 대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자산 양도 시 양도금액(익금)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손금)을 차감하도록 설계한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는 수익 창출을 위해 희생된 자산 가치를 동일한 사업연도에 결속시켜 기간 손익을 획정하려는 세법 고유의 기간귀속 구조가 명확히 발현된 결과이다.

특히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이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손비로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이 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규정한 것은, 개별 자산(또는 개별 거래)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익금 사이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세법이 직접 법문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Ⅲ장 제2절에서 살핀 개별 대응가능성이라는 판별 기준이 단순히 회계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세법 조문 자체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

회계기준 준용 규정은 세법에 없는 원칙을 외부에서 형식적으로 차용하는 절차적 수단이 아니다. 세법이 스스로 조문 내에 차용해 둔 '장부가액'과 '원가 배분'의 실질적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수익과 비용을 구조적으로 결속시켜 놓은 세법 자체의 개별 조문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귀속 시기를 판단할 때만 기간 대응의 논리를 배제한 채 법적 확정의 형식적 요건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세법령 자체의 기간배분 원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결국, 세법이 고유한 장부와 상각 규정을 과세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상, 손금 귀속 시기의 판단 역시 세법 내에 이미 내재된 기간배분 구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관성에 부합할 것이다.

## 4. 법학적 관점에서 판례 분석 : 방문판매 수수료 사례(대법원 2008두12320)

본 절에서는 비용 지출의 법률적 의무가 선행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인식 시점과 유기적 결속을 근거로 손금 인정을 유예시킨 방문판매 수수료 판례[9]를 통해 의무확정주의의 실무적 적용 양상과 그 규범적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 가.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판매원들과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면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판매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비로소 매출로 인식하였다. 한편 원고의 '방판마케팅 플랜'에는 매출이익이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원들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원고는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 즉 계약금만을 수령하여 매출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즉시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계약금 수령 시점에 계상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상품 인도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였다. 원심 및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논거는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상품 등의 판매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였다. 즉 원고는 계약금 수령 시점에 수취한 대가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여 인도 시점까지 익금 인식을 유보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판매수수료는 인도 시점이 아닌 계약금 수령 시점에 곧바로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익금

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이 판결은 하나의 사건 안에서 ①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②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선급비용 해당 여부), ③ 자기주식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 여부라는 세 가지 쟁점을 함께 다루고 있다. 본고는 그중 ②의 쟁점, 즉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판시 부분(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서로 어긋나게 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판시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를 명시적으로 원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판결문상 근거조문은 시종일관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한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수익비용대응의 논리를 승인하였을 뿐, 이를 제43조를 매개로 한 회계기준의 직접 준용으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 나. 법학적 관점의 비판적 분석

법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핵심적 의의는, 지출의 법률적 채무가 성립하고 현금 유출까지 완료된 법률상 확정 채무를 세법이 어떠한 규범적 경로를 통해 당기 손금이 아닌 미래의 자산으로 유예할 수 있었는가에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경로는, 회계기준을 별도로 차용하는 제43조가 아니라 세법 자체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제40조 및 시행령 제68조)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인도기준 구조 하에서, 익금은 상품이 인도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법원은 이 익금 귀속시기 규정을 그대로 손금에도 적용함으로써, 별도의 회계기준 준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익금과 손금을 동일한 사업연도에 결속시키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즉 판매수수료를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파악한 원심의 표현 방식과는 별개로,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실제로 의지한 규범적 근거는 세법 고유의 귀속사업연도 조항 그 자체였다. 이는 법인세법이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함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손금의 귀속시기까지 사실상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이미 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판시 태도는 본고가 앞서 제Ⅲ장 제1절 내지 제3절에서 논증한 바, 즉 법인세법이 회계상 발생주의 원리를 외부에서 사후적으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가액(제19조)·감가상각(제23조)과 같은 조문을 통해 이미 조문 내에 기간배분의 논리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주장과 정확히 부합한다. 방문판매 수수료 판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국면에서도 세법이 회계기준의 매개 없이 자신의 귀속시기 규정(제40조·시행령 제68조)만으로 수익비용대응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실제 사법 판단을 통해 확인시켜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이 남긴 해석상의 여백도 있다. 대법원은 인도기준이라는 시행령상 명시적 기준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었을 뿐이며, 판매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결정하는 근거, 즉 그러한 자산 개념 자체가 세법 실체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는 판결문상 직접 다루어지지 않았다. 원심이 '선급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관계 설시 과정에서 회계상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단 자체는 이 개념의 세법상 근거를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는 시행령상 귀속시기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비전형적 거래(다음 장에서 다룰 계약체결 증분원가 등)의 경우, 본 판례가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본 판례는,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한 세법 고유의 규정이 그에 대응하는 손금의 귀속시기까지 규율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세법 내재적 기간배분 구조에 관한 본고의 논증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가 된다. 다만 이러한 논리가 인도일과 같은 단일하고 명확한 법정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를 요하며, 이는 제Ⅳ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Ⅳ. 추가적 논의 : 현대적 비전형 거래 하에서의 해석론적 확장

## 1. 현대적 거래 환경과 회계적 인식 기준의 변화

방문판매 판례에서 확인된 세법 내부의 기간 배분 논리는 현대적 거래 형태인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나 플랫폼 서비스 환경을 맞이하여 한층 더 복잡한 해석상의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의 단발성 판매 구조에서는 지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했던 항목들이, 서비스 제공 기간이 장기화되는 비전형적 거래 구조 하에서는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계약체결 증분원가' 또는 '계약이행원가' 등의 자산으로 우선 인식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1115호는 현대 경제의 복잡다단한 거래 형태를 포착하기 위해 방대한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를 넘어, 콘텐츠의 접근권 부여와 플랫폼 유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 사후적인 리베이트나 반품권에 의해 대가가 변동되는 거래 등 수익 인식의 시점과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계적 정교화의 핵심은 수익 인식의 판단 잣대를 법률상 권리의 성립이 아닌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Control)하여 그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 둔다는 점에 있다. 특히 회계는 확정을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라 추정치의 제약(Constraint)이라는 확률의 문제로 다룬다. 즉,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건을 현재의 수익 측정치에 미리 반영함으로써 기간 손익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의 이러한 확률적·추정적 접근이 세법에 무조건적으로 수용될 수는 없다. 법인세법은 회계의 발생주의적 골격을 체계 내에 이미 내재화하고 있으면서도, 조세행정의 객관성과 자의성 배제를 위해 '의무의 확정'이라는 명문의 최종 제한 장치(제40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가 수익 인식 스케줄을 세분화함에 따라 그에 연동된 비용의 자산화 흐름이 강해지더라도,

세법은 해당 지출이 세법 자체의 규범 구조 내에서 '확정된 손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혹은 세법 내에 수용된 기간배분 시스템에 따라 자산화(이연)해야 하는 항목인지를 주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 2.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세법상 귀속을 둘러싼 대립과 과세 과제

이러한 회계 환경의 변화는 비용 지출의 법률상 의무가 성립한 시점과 그 지출이 기여할 수익의 실현 시점이 장기적으로 괴리될 때, 세법상 의무확정주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난제를 남긴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이 고객과 장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수수료(계약체결 증분원가) 사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출은 외형상 특정 시점의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성립하고 현금 유출이 완료되므로, 세법의 전통적 실무 관점에서는 순자산이 감소한 당해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그러나 K-IFRS 제1115호 하에서 해당 지출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장기 수익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즉 자산화 후 기간 배분 대상인 원가로 식별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적 거래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귀속 시기를 둘러싼 다툼이 생긴다면, 핵심 쟁점은 결국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즉 방문판매 판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익금의 귀속시기에 맞추어 손금의 인정 시점도 함께 미루는 논리'를 이 새로운 유형의 원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로 모아진다. 다만 방문판매 판례는 '인도일'이라는 시행령상 단일하고 명확한 법정 시점이 존재하는 사안이었던 반면,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그러한 명문의 시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논리를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세법 내재적 원가배분 구조로부터 별도의 판단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3. 세법 중심의 판별기준 : 2단계 검증 구조

본고는 앞서 제Ⅲ장에서 확인한 세법 내재적 기간배분 구조 – 즉 특정 원가가 식별 가능한 미래 수익과 개별적으로 결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산화(이연) 여부가 갈린다는 논리 – 를 계약체결 증분원가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2단계 판별기준을 제안한다.

### 가. (1단계) 자산성 판단 : 개별 대응가능성 테스트

지출이 손금으로 즉시 확정될 것인지, 자산으로 유예될 것인지는 해당 지출이 식별 가능하고 특정 가능한 미래의 익금 발생원(개별 계약 또는 개별 거래)과 개별적·구체적 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본고가 제Ⅱ장에서 살핀 회계상 비용인식의 세 가지 경로 중 직

접적 대응 및 체계적·합리적 배분과 기간 대응을 가르는 기준과 동일한 문법이며,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이 재고자산 원가 및 처분자산의 장부가액을 통해 이미 구현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

계약체결 증분원가, 즉 특정 고객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된 중개수수료 등은 그 지출의 원인이 된 계약이 특정되어 있고,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수익(계약기간에 걸친 용역대가)의 발생원 역시 특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 대응가능성 테스트를 충족한다. 이는 특정 수익원과의 연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반 광고비·판매촉진비 등의 기간비용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세법 고유의 논리 – 재고자산이 판매(익금 확정) 시점까지 자산으로 유예되는 것과 동일한 문법 – 에 따라 지출 시점에 즉시 손금화되지 않고 자산으로 유예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결론은 K-IFRS 제1115호가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도출 경로는 회계기준의 준용(제43조)이 아니라 세법 제19조가 이미 갖추고 있는 개별대응의 문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규범적 근거를 달리한다.

### 나. (2단계) 배분 스케줄의 확정과 사후 조정 : 감가상각 법리의 유추 적용

1단계에서 자산화가 결정된 이후의 문제는, 그 자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배분할 것인가이다. 방문판매 판례의 인도기준과 달리,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배분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행의무의 충족 정도, 계약 변경, 중도 해지 등의 사유로 당초 예정된 배분 스케줄이 사후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 문제는 세법에 이미 존재하는 감가상각 법리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3조의 감가상각 제도 역시 자산의 가치가 내용연수에 걸쳐 소멸한다는 잠정적 예측을 전제로 상각 범위액을 설정하되, 자산의 처분이나 멸실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잔존 장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으로 확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제19조 제2항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법리와 결합). 계약체결 증분원가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① 최초 자산화 시점에는 계약기간을 잠정적 배분기간으로 하여 상각하되, ② 계약이 변경·중도해지되는 등 당초 예정된 미래 수익 발생원이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시점의 미상각 잔액을 즉시 손금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새로운 법리를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감가상각 자산의 처분·멸실 시 이미 채택하고 있는 '자산 소멸 시 잔존가액의 즉시 손금화' 원리를 계약체결 증분원가라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 유추 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리하면,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손금 귀속시기는 ① 개별 대응가능성 테스트를 통해 자산화 여부를 판단하고, ② 자산화가 결정된 경우 감가상각 법리를 유추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배분하되 계약 변경·해지 등 사유 발생 시 잔액을 즉시 손금으로 확정하는 2단계 구조로 세법 내재적 논리만으로 판단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제43조의 회계기준 준용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 4.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다만 위와 같은 2단계 판별기준은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같이 미래 수익의 발생 여부 및 규모 자체는 상당히 확실하고 다만 그 배분 시점·스케줄만이 사후 변경 가능성을 갖는 경우를 전제로 성립한다. 이와 달리 K-IFRS 제1115호가 예정하는 진행기준 수익인식이나 변동대가(반품권, 리베이트 등)가 결합된 거래처럼, 미래 수익의 발생 여부 및 금액 자체가 확률적·추정적으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애초에 대응시킬 '미래의 익금'이라는 준거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본고가 전제하는 개별 대응가능성 테스트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 경우 세법상 '확정'의 개념이 회계상 추정치의 제약(constraint)이라는 확률적 판단 구조와 어떻게 정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 예컨대 일정한 확률적 임계치를 세법상 '확정'의 기준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수용이 의무확정주의가 본래 추구하는 조세행정적 확실성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고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 Ⅴ. 결 론

본 논문은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가 현대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 원칙, 특히 K-IFRS 제1115호의 정교화된 인식 모델과 만날 때 발생하는 규범적 관계와 해석상의 난제를 고찰하였다.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에 대한 재인식이다. 전통적인 세법 해석에서 '확정'은 법률상 채무의 성립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해 왔으나, 세법상 의무확정주의는 결코 회계의 발생주의 사상과 단절된 원칙이 아니다. 세법은 이미 자산의 장부금액(제19조)과 감가상각 규정(제23조) 등을 통해 기간배분과 원가대응의 논리를 일정 부분 체계 내에 반영하고 있다. 즉, 의무확정주의는 세법 내재적 기간배분 구조 위에서 손금 인정을 과도하게 허용하지 않기 위해 '법적 종결성'이라는 최종적인 제한 장치를 부가하여 통제하는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법상 '준용' 조항의 해석적 기능과 세법 내재적 기간배분 원리의 확립이다.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은 세법에 없는 원칙을 외부에서 형식적으로 차용하는 절차적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내부의 기간배분 구조와 의무확정주의를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한 보충적 규범 요소로 기능해야 한다. K-IFRS 제1115호 도입에 따른 계약체결 증분원가 사례의 과세 쟁점 전망에서 보듯, 지출이 미실현 익금에 대응하는 '미래의 원가' 성격을 지닌다면 세법은 외부 기준에 자동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조문 구조를 바탕으로 손금 인정을

유예시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즉, 향후 새로운 회계적 실질을 마주할 때 회계기준의 형식적 준용에 평면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세법 고유의 귀속 정합성을 바탕으로 손익 귀속을 제어하는 세법 중심의 해석론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세법 운영은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의 법적 확실성을 수호하면서도, 고도화된 경제적 실질을 법인세법 체계 자체의 내재적 정합성 하에서 합리적으로 포섭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전형적이고 복잡한 거래 구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서, 경직된 법적 형식주의의 고수는 자칫 과세의 객관성을 넘어 세법 자체의 기간귀속의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세법 중심의 해석적 접근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손금 부인이나 소득 재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세법 문언의 한계 내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엄격해석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적·해석적으로 의무확정주의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세법령에 내재된 기간배분적 조문 구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관성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 구조가 확립될 때, 법적 확실성과 경제적 실질이 세법 내부에서 조화롭게 수렴되는 규범적 안정성의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The study in this manuscript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Guidelines set forth by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AI 사용 공시] 본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AI Disclosure] No generative AI tool was used in the preparation of this manuscript.

[이해상충 공개] 참여 저자 모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기타 이해상충이 없음을 확인함.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s of interest associated with this manuscript.

# REFERENCES

Dichev, I. D., and Tang, V. W. 2008. Matching and the changing properties of accounting earnings over the last 40 years. *The Accounting Review*, 83 (6) : 1425－1460.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 (2020).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Seoul, Korea. [Printed in Korean]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 (2020).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No. 1115 :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Seoul, Korea. [Printed in Korean]

Kim, J. S. 2013. Study on Improving the Timing Rule in Corporation Tax Law. *Seoul Tax Law Review*, 19 (3) : 213－253. [Printed in Korean]

Kim, J. S. 2014. Study on Improving the Timing Rule in Korean Tax Law － Focusing on Deductible Expenses. *Seoul Tax Law Review*, 20 (1) : 81－118. [Printed in Korean]

Kim, K. H. 2020. A Study on Recognition of Income in the Korean Corporation Tax Law.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5 (4) : 331－360. [Printed in Korean]

Kim, W. S., and Hwang, N. S. 2026. Corporate Tax Law. Seoul : Kwangkyo E-Tax. [Printed in Korean]

Kim, H. D. 2022. Could the Right Decision Basis be the Criteria for Tax Law?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27 (4) : 85－119. [Printed in Korean]

Lee, C. H. 2026. Lectures on Tax Law. Seoul : Pakyoungsa. [Printed in Korean]

Lee, T. R., and Han, M. S. (2020). Lectures on Tax Law. Seoul : Pakyoungsa. [Printed in Korean]

Lim, S. S. 2019. New Understanding on Withholding Tax and Disposition of Income. *Seoul Tax Law Review*, 25 (1) : 273－323. [Printed in Kore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6. Corporate Tax Act. Sejong, Korea. [Printed in Kore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6.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Sejong, Korea. [Printed in Kore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6. Enforcement Rule of the Corporate Tax Act. Sejong, Korea. [Printed in Korean]

Paek, W. S. 2011a. Changes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and the Matching Principle. *Korean Management Review*, 40 (1) : 29－49 [Printed in Korean]

Shin, H. G., Choi, C. G., and Kim, H. S. 2026. IFRS Intermediate Accounting. Seoul : Tamjin. [Printed in Korean]

## 국내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26). 법인세법.
기획재정부(2026).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2026). 법인세법 시행규칙.
김길훈, 2020.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35권 제4호 : 331－360.
김완석 · 황남석, 2026.「법인세법론」, 서울, 광교이택스.
김재승, 2013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19권 제3호 : 213－253.
김재승, 2014. “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 조세법연구. 제20권 제1호 : 81－118.
김현동, 2022. “권리의무확정주의? : 세법상 손익인식기준으로서 폐기를 위한 시론.” 회계와 정책연구 : 85－119.
백원선, 2011a. “회계환경의 변화와 수익비용대응원칙.” 경영학연구, 제40권 제1호 : 29－49.
신현걸 · 최창규 · 김현식(2026).「IFRS 중급회계」, 서울, 탐진.
이태로 · 한만수, 2020.「조세법강의」, 서울, 박영사.
이창희, 2026,「세법강의」, 서울, 박영사.
임승순, 2019, “원천징수와 소득처분에 관한 새로운 이해.” 조세법연구, 제25권 제1호 : 273－323.
한국회계기준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